#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02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.

발 의 자:김민전·박덕흠·인요한

조배숙 • 유용원 • 박수민

김태호 • 이철규 • 이주영

안철수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

현행법에 의하면, 현직 법관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관행적으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왔음.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을 겸직하며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.

또한 현직 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함에 따라 위원장직의 비상임화가 초래되고, 이는 선관위 조직의 책임운영과 효 율적인 사무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.

이에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하고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 및 임기와 대우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설소위

를 도입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의 부 위원장이 될 수 있는 '법관'을 '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 부한 사람'으로 대체함(안 제4조제2항·제3항 및 제5조제7항 단서)
- 나.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함(안 제5조제1항).
- 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없도록 함(안 제5조제4항 신설).
- 라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대우와 보수는 부총리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,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 공무원으로 하며,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폐지함(안 제5조제5항 신설 및 제12조제2항).
- 마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2명의 상임위원을 두고,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, 국회가 선출한 위원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도록 하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(안 제6조 신설).
- 바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소위원회를

상설로 설치하고,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,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함(안 제11 조의2 신설).

### 법률 제 호

#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"法官 2人을 포함한 3人"을 "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3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"法官·敎育者" 를 "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및 교육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.

⑤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委員長 1人을 둔다"를 "위원장 1명을 두며,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와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4항) 단서 중 "法官"을 "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"으로 한다.

-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없다.
-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대우와 보수는 부총리의 예에

- 따르며,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.
- ⑥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 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.
- 1. 법관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
- 2. 대학에서 행정학·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
- 3.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6조(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)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 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2명의 상임위원을 둔다.
  -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, 국회가 선출한 위원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한다.
  -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수 없다.
- 제6조의2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6조의2(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호선)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호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- 제11조의2(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)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한다.
  - ② 소위원회는 상설로 한다.
  -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,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한다.
  - ④ 소위원회는 2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"하며, 市·道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1급인 일 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 무원으로 한다"를 "한다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 및 부위원장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·제3항·제5항 및 제5조제6항·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거나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거나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호선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부터 적용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第4條(委員의 任命 및 위촉) ① 第4條(委員의 任命 및 위촉) ① (현행과 같음) (생 략) ② 市・道選擧管理委員會의 委 員은 國會議員의 選舉權이 있 고 政黨員이 아닌 者중에서 國 會에 交渉團體를 구성한 政黨 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地域을 관할하는 地方法院長이 추천하 는 法官 2人을 포함한 3人과 -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 教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 이 풍부한 3인-----는 者중에서 3人을 中央選擧管 理委員會가 위촉한다. ③ 區·市·郡選擧管理委員會 의 委員은 그 區域안에 居住하 는 國會議員의 選舉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者중에서 國會 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이 추천한 사람과 法官・教育者 -----선거관리 및 선거범 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및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 에서 6人을 市・道選舉管理委 교육자-----員會가 위촉한다. 다만, 政黨이 추천하는 委員은 選擧期間開始

日(委託選擧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國民投票案公告日 후에는 당해 區・市・郡選舉管 理委員會가 위촉할 수 있다.

### ④ (생 략)

- ⑤ 區・市·郡選擧管理委員會와 | 읍 · 면 · 동선거관리위원회의 委員이 될 法官과 法院公務員 | 및 敎育公務員은 居住要件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法官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- ⑥ 法官과 法院公務員 및 教育 | <삭 제> 公務員 이외의 公務員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.

第5條(委員長) ① 各級選舉管理委 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둔다.

② · ③ (생략) <신 설>


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 와 읍 • 면 • 동선거관리위원회 의 위원은 각각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사 람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 다.

- (7) ~ (13) (생 략)
   (7) ~ (13) (현행과 같음)
  - 第5條(委員長) ① ------

----위원장 1명을 두며,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 · 도선 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 으로 한다.
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 ·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

<신 설>

<신 설>

④ 區・市・郡選擧管理委員會 와 읍・면・동선거관리위원회 에 副委員長 1人을 두며 당해 選擧管理委員會委員중에서 互 할 수 없다.

-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장의 대우와 보수는 부총리의 예에 따르며, 시·도선거관리위 원회의 위원장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「국가공무 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 제공무원으로 한다.
- ⑥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거 및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.
- 1. 법관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
- 2. 대학에서 행정학·정치학 또
   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
  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
   사람
- 3.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

$\underline{\underline{(I)}}$	 	 	 	 	 	 	_	_	_
	 	 	 	 	 	 -	_	_	_

選한다. 다만, 區・市・郡選擧 管理委員會는 「공직선거법」 第173條(開票所)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區・市・郡選舉 管理委員會가 2개이상의 開票 所를 설치하는 경우의 選擧管 理를 위하여 第4條(委員의 任 命 및 위촉)第3項의 委員定數 에 불구하고 開票所마다 地方 法院長 또는 支院長이 추천하 는 法官 1人을 당해 區・市・ 郡選擧管理委員會 副委員長으 로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勤 務期間,實費補償 및 委囑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 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.

## <u>⑤</u> (생 략)

第6條(常任委員) ① 中央選擧管理 委員會와 市・道選擧管理委員 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 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각 1人 의 常任委員을 둔다.

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

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
식견이 풍부한 사람
<u>⑧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세6조(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
임위원) ① 중앙선거관리위원
회에 소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
하여 2명의 상임위원을 둔다.
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
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
면하 외원 구히가 서축하 외워

委員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.
③ 市・道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 選擧 및 政黨事務에 관한 識見이 풍부한 者중에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指名하되常任委員으로서의 勤務上限은 60歲로 한다.

- 1. 法官・檢事 또는 辯護士의職에 5年이상 근무한 者
- 2. 大學에서 行政學・政治學 또는 法律學을 담당한 副教授이 상의 職에 5年이상 근무한 者3. 3級이상 公務員으로서 2年이

상 근무한 者

<신 설>

<신 설>

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한다.

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없다.

제6조의2(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호선)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 상임위원의 호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제11조의2(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)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한다.

第12條(委員의	待遇)	1	(생
략)			

- 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 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 그 보수는 國務委員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, 市・道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「국가공무원으로서 「국가공무원으로서 「국가공무원으로 한다.
- ③ (생략)

-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,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 원으로 한다.
- ④ 소위원회는 2명 이상의 출 석으로 개의하며,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한다.

第12條(委員의	待遇)	1	(현행과
같음)			

(2)		 	 	
	- <u>한다</u> .			

③ (현행과 같음)